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37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7.
3. 회 부 일: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u>⑥</u> ----- <u>제5항까지의</u> ----- ----- ----- -----.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공공기관 및 직장을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현재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도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둘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2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8개) 중 직장인 1천명 이상으로 현행 법령상 운동경기부 설치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2개이며, 설치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33개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운동경기부를 실제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08개(84.9%),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37개(15.1%)로써, 의무가 있으나 미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3개(5.3%)로 파악됨³⁾.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을 위해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둘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이 확대되어 생활체육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률에서 개정안 법률과 유사한 구조의 조항이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법률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⁴⁾.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개정안은 운동경기부 설치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선수 고용 안정 및 지역 스포츠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재정적으로 국가의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의 재정 건전성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무화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수정의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통계

○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326개 단체, 842팀)

(단위: 개), 장애인팀 미포함 / '25년 12월 기준

구분	합계	공공기관			공공단체			체육 단체	일반 기업	국군 체육 부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특수 법인			
단체수	326	11	2	3	208	27	2	27	45	1
팀수	842	23	7	3	545	32	3	148	56	25

○ 지역별 현황('25년 12월 기준)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서울	81	9.62	울산	17	2.02	전북	42	4.99
부산	47	5.58	세종	1	0.12	전남	44	5.23
대구	41	4.87	경기	151	17.93	경북	101	12.00
인천	45	5.34	강원	59	7.01	경남	50	5.94
광주	28	3.33	충북	43	5.11	제주	14	1.66
대전	36	4.28	충남	42	4.99	합계	842	100%

○ 지도자·선수 현황('25년 12월 기준)

지도자(명)				선수(명)			
남성팀 지도자	여성팀 지도자	혼성팀 지도자	계	남성팀 선수	여성팀 선수	혼성팀 선수	계
469	348	452	1,269	2,498	1,693	2,123	6,314

○ 계약 현황('25년 12월 기준)

-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현황

지도자(명)/비율(%)			선수(명)/비율(%)		
정규직	계약직+기타	계	정규직	계약직+기타	계
91(9.4%)	879(90.6%)	970(100%)	279(5.6%)	4,585(94.0%)	4,951(100%)

- 정규직/비정규직 계약 현황 상세

지도자							선수					
정규직	계약직 (계)	계약기간		기타	무응답	계	정규직	계약직 (계)	계약기간		기타	무응답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91	855	790	65	24	299	1,269	279	4,585	4,078	515	69	1,363

○ 종목별 현황

종목명		팀 수	비율 (%)	종목명		팀 수	비율 (%)
하계올림픽대회(32)		621	73.8	하계아시안경기대회(32+9)		41	4.9
1	축구	11	1.3	33	세팍타크로	14	1.6
2	배구	10	1.2	34	우슈	11	1.5
3	농구	5	0.6	35	스쿼시	11	1.3
4	골프(파크골프)	1(1)	0.1	36	소프트볼(야구)	5(1)	0.5
5	육상	90	10.8	37	가라데	0	0.0
6	레슬링	34	4.0	38	크라쉬	0	0.0
7	태권도	37	4.4	39	카바디	0	0.0
8	양궁	31	3.6	40	주짓수	0	0.0
9	수영(수구)	30(3)	3.6	41	e스포츠	0	0.0
10	역도	29	3.4	전국체육대회(49=30+4+15)		803	95.4
11	복싱	26	3.1	42	볼링	25	2.9
12	유도	30	3.6	43	씨름	25	3.0
13	사격	28	3.4	44	검도	26	3.0
14	자전거	28	3.3	45	소프트테니스	22	2.6
15	펜싱	27	3.1	46	롤러	15	1.6
16	탁구	26	3.0	47	당구	8	1.3
17	테니스	23	2.8	48	핀수영	8	1.2
18	배드민턴	25	3.0	49	보디빌딩	5	0.7
19	카누	19	2.1	50	수상스키웨이크보드	3	0.3
20	체조	17	2.1	51	에어로빅	3	0.3
21	조정	19	2.2	52	궁도	2	0.3
22	근대5종	16	1.9	53	바둑	0	0.0
23	핸드볼	14	1.6	54	택견	0	0.0
24	요트	11	1.3	55	합기도	0	0.0
25	철인3종	11	1.3	56	족구	0	0.0
26	하키	10	1.2	동계올림픽대회(7)		37	4.3
27	럭비	5	0.6	57	빙상	12	1.3
28	승마	2	0.3	58	컬링	9	1.0
29	산악(스포츠클라이밍)	3(0)	0.2	59	스키	5	0.6
30	댄스스포츠(브레이킹)	2(2)	0.3	60	바이애슬론	7	0.8
31	서핑	1	0.1	61	루지	1	0.2
32	스케이트보드	0	0.0	62	아이스하키	2	0.2
합계		842	100	63	봅슬레이스켈레톤	1	0.1

*무응답 종목: 기타 1개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
 : 비 전국체육대회 종목